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단758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 (개명전:D)

변 론 종 결 2024. 5. 16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, (1)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(2) 4,400,000원을 지급하고, (3) 2023. 12.

6.부터 위 (1)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C은,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가. 피고 B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오성우

별지